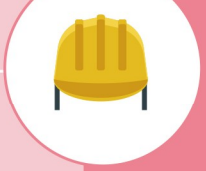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령 주요내용

2024. 2.









고용노동부

Contents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5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6.27. 공포)

1.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협조(시행령 제8조의2) ····· 7
2.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위임 근거 신설
 (시행령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의2호, 제117조제10호) ····· 10
3.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변경(시행령 별표 7) ····· 15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변경(시행령 별표 19) ····· 19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23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7

(부령 제393호, 2023.9.27.공포)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시행규칙 제26조) ····· 29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칙 제29조) ····· 31
3.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 4) ····· 34
4.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시행규칙 별표 5) ····· 43
5. 수입자의 비공개승인번호 연계 허용(시행규칙 제162조) ····· 49
6.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시행규칙 제163조 및 별지 65~66호 서식) ····· 52

7.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시행규칙 제175조) ····· 59

8.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대상 완화
(시행규칙 제181조 및 별지 제77호 서식) ····· 63

9. 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해제 절차 명문화(시행규칙 제221조) ····· 67

10.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서식 신설
(시행규칙 제228조의2, 별지 제90호의2 및 3 서식 신설) ····· 70

11.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추가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 75

1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 변경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제105호 서식) ····· 78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83

(부령 제399호, 2023.11.14.공포)

1.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안전보건규칙 제13조) ····· 85

2.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안전보건규칙 제17조) ····· 89

3. 계단참의 설치 기준 개선(안전보건규칙 제28조) ····· 93

4.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 기준 합리화(안전보건규칙 제60조) ····· 96

5. 입환기의 정의 명확화(안전보건규칙 제98조) ····· 99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전도방지 규정 표현 정정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 101

7. 고소작업대 이동 규정 명확화(안전보건규칙 제186조제3항) ····· 103

Contents

8. 경사면 외에서의 중량물 구름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86조) ····· 106

9.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유해가스 명칭 변경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 108

10. 붕괴 안전기준 정비 관련 보완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38조, 제39조) ····· 111

11. 붕괴 일반 안전기준 정비(안전보건규칙 제50조~제53조) ····· 116

12. 거푸집 동바리 안전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328조~제337조, 별표 10) ····· 122

13. 노천굴착작업 안전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347조, 별표 11) ····· 137

14. 해체작업 시의 위험방지 안전기준 정비(안전보건규칙 제384조) ····· 14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6.27. 공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받은 '화학물질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을 통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동일하게 1천만원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백만원, 2회 위반 시 6백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고층 건축물이나 터널·댐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과태료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지도사, 보건교육사, 관세사 등 다른 국가자격의 경우처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발급하여 그 국가자격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령 제393호, 2023.9.27.공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등의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이거나 근로가 제한되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99호, 2023.11.14.공포)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

의무’와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시스템 동바리, 보 형식 동바리’ 등 동바리 유형별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의무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구축물 등을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6.27. 공포)

1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협조 (시행령 제8조의2)

근거 법령

◇ **법 제8조(협조 요청 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략)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1 개정 배경

■ ’21.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심사제도*’ 도입**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해야 함 ▲화학물질 판매·양도 시 MSDS를 제공해야 함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MSDS 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비공개하는 등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 발생**

* ’22.2월 창원 소재 제조업체 16명 급성중독, 3월 김해 소재 제조업체 13명 급성중독 발생

■ **중독사고 재발방지**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의 **화학물질 유통실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 화학물질 유통망 관리 뿐 아니라 **빅데이터 DB**를 통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산재예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

2 개정 내용

■ 환경부 **화학물질 관련 통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제8조의2 협조요청대상 정보에 화학물질확인 정보**를 추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협조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경우)	■ 협조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자료보호 정보 제외)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윤	연락처	044-202-8966

2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위임 근거 신설 (시행령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의2호, 제117조제10호)

근거 법령

◇ **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산업안전·보건 지도사**는 '현장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도 및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배출할 목적으로, '96년 산업안전보건법(現 제142조)에 도입된 국가전문자격 제도로서 '22년까지 1,487명의 지도사 배출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합격 확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 지도사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증 발급(제145조)

◉ 현재, **다른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경우, **등록과 별개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있었고,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지도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

2 개정 내용

■ 지도사 자격증 신청·발급 근거규정 마련
(시행령 제105조제3항 신설)

■ 지도사 자격증 발급 지방노동관서 업무위임 근거 마련
(시행령 제115조제52의2호 신설)

■ 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시행령 제117조제10호 신설)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제105조(합격자 결정) ①~② (생략) (신설)	**제105조(합격자 결정 등)** ①~② (생략) ③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제115조(권한의 위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52. (생략) (신설)	**제115조(권한의 위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52. (현행과 같음)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9. (생략) (신설)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9. (현행과 같음)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시행일) 2023년 9월 28일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합격자 결정) ①·② (생 략)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 ---.
1. ~ 52. (생 략)	1. ~ 52. (현행과 같음)
〈신 설〉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3. (생 략)	53. (현행과 같음)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

현 행	개 정 안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4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태	연락처	044-202-8814

3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변경 (시행령 별표 7)

근거 법령

◇ **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개정 배경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인력 기준으로 **산업안전 관련 자격, 학력, 실무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며

◉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자격은 제외)**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인정하고, 일부 완화된 자격인 **양성교육 수료자,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은 제외

■ '22.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별표 4 제11호, 제12호 신설)함에 따라

◉ **산업안전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반영**할 필요

참 고 현행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 중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구 분	호	요 건
안전관리 전문기관 인력기준 4)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5	전문대학 수준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인력기준 4) 안전관리자 **자격 불인정**	6	이공계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자업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 교육('98.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
	7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자업무 5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 교육('98.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
	8	다른 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채용·선임된 안전관리자 등
	9	전담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자
	10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자
'22.8.18. 신설	11	토목·건축 분야 중급 건설기술인 이상인 자로서 지정 교육 ('23.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12	토목·건축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을 갖춘 후 지정 교육 ('23.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2 개정 내용

■ 별표 7 제2호 가목 4)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만 인정**하여 신설된 **제11호, 제12호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 별표 4 제11호, 제12호는 '22.8.18. 신설된 자격(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말한다)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인력	인력
1) ~ 3) (생 략) 4) (생 략)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 (---------- 제7조 ----------)----------

현 행	개 정 안
인력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기계 · 금속 · 화공 · 전기 · 조선 · 섬유 · 안전관리(소방설비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 · 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생 략)	인력 나) ---------- ---------- ---------- ----------(---------- ---------- ---------- ---------- ----------제7조 ---------- ----------)---------- -- ※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비고 (생 략)	비고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044-202-8853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변경 (시행령 별표 19)

근거 법령

◇ **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개정 배경

■ 그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하 '지도기관')의 **지도인력 중 4번째 유형**은 '안전관리자 자격 갖춘 후 실무경력 2년'이라 규정하며,

◉ 이때 안전관리자 자격은 10가지 유형 중 **5가지만 인정** (제1호~5호는 인정, 제6호~10호 불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건설업계 인력난으로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요구**('2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 자격) 신설 내용**('22.8.16. 개정) (요약)

11.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2년 8월 **임시로 확대한 2가지 유형**(11, 12호)의 안전관리자는 **기존 제6호~10호와 같이** 제1~5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이 낮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4) **별표4 제6호~제10호를 제6호~제12호로 개정**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

참 고 현행 지도기관의 지도인력 기준 중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및 불인정 자격자

구 분	호	요 건
지도인력 4)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5	전문대학 수준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지도인력 4) 안전관리자 **자격 불인정**	6	이공계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자업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 교육('98.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
	7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자업무 5년 이상인 자로서 지정 교육('98.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
	8	다른 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채용·선임된 안전관리자 등
	9	전담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자
	10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자
신설	11	토목·건축 분야 중급 건설기술인 이상인 자로서 지정 교육 ('23.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12	토목·건축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후 지정 교육 ('23.12.31.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2 개정 내용

■ 안전 관련 자격 및 학위 취득자 등 **안전관리 전문성을 가진 자**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현행** 지도인력 기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 이와는 **별개의 취지로** 임시 **신설**된 **경우도 제한함이 타당**

◉ 시행령 [별표 19] 나목 4) 중 별표 4 제6~10호의 자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1호, 12호도 포함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말한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1. (생 략) 가. (생 략)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2. (생 략) 가. (생 략)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4)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4)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연락처	044-202-8937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거 법령

◇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1 개정 배경

- 현행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35)
-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2 개정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 차등 부과***

 * 다만, 일반적으로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기준(제119조 관련)

1.~3. (생 략)

4.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어.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저.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	법 175조 제4항 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심사 결과서를	1,000	1,000	1,000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기준(제119조 관련)

1.~3. (현행과 같음)

4.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어.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저.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	법 175조 제4항 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심사 결과서를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이하 생략				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이하 생략	300 1,000	600 1,000	1,000 1,000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연락처	044-202-8852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제393호, 2023.9.27. 공포)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 (시행규칙 제26조)

근거 법령

◇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하 생략)

1 개정 배경

■ 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격**(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제***에서 이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정비** 필요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 개정 내용

■ 시행규칙 제26조 **표제 문구 정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건우	연락처	044-202-882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시행규칙 제29조)

근거 법령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개정 배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총 6개월)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총 6개월**이지만, **교육기관의 운영주기는 대부분 1년**으로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대상자가 이수기간 내 **원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예시) A근로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10.1~3.31, B기관의 보수(전문화)교육 일정: 4월, 8월

◉ 따라서,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필요

2 개정 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 기준,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9. (생 략) ②·③ (생 략)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6개월 사이----------.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건우	연락처	044-202-8820

3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법령

◇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개정 배경

1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분기 6시간으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분기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음 분기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법령위반**

◉ **사업장**에서 **정기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확대**

2 **기간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임에도 **채용 시 교육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여 **과도**한 측면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8시간 의무 동일

◉ **일용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동일한 일용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1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고 형식적 교육 운영 초래

* 쿠팡 등 야간근로 취약사업장 감독 시('21.5.~7.)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같은 업무로 연속하여 채용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를 시달한 바 있음

◉ **기간제 근로자** 및 반복적·상시적 노무 제공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3 산안법 시행령 별표1(산안법 적용 제외 대상 및 해당 법규정)에 따라 **교육의무**가 안전·보건이 아닌 '**보건에 관한 사항**'에만* 있거나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도,

◉ **교육시간**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육해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하여 개선 필요

*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타법에 교육의무 有

4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인 **관리감독자**의 교육이 **일반 근로자 교육의 일부로 규정**되어 사업장에서 교육 활성화 한계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여 **중요성 부각** 필요

5 특별교육 대상 작업 개정('21.11월) 이후 연관된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오류 발생 → 오타 수정 및 기타 문구 정비 필요

2 개정 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 근로자건강센터 교육 이수 관련 면제 대상 기간 동시정비(해당 분기 → 해당 반기)(시행규칙 제27조제2항)

2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동안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 (별표 4 제1호 비고2)

3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3)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4, 비고5)

4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1의2)

5 오타 수정 및 문구 정비

◉ 특별교육 대상 작업 제40호 → 제39호로 수정(별표 4 제1호 라목)

◉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 문구 정비 (별표 4 제1호 비고2, 3 → 비고4)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제1호가목)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 매분기 6시간 등	▪ (제1호가목)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 매반기 12시간 등
▪ (제1호나목)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 (제1호나목)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 (제1호다목) 일용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 : 2시간	▪ (제1호다목)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 : 2시간
▪ (제1호라목) 제40호	▪ (제1호라목) 제39호
▪ (제1호 비고2)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면제 (제1호 비고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안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면제	▪ (제1호 비고3) 영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실시 규정 신설 ▪ (제1호 비고4)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때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면제 가.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안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현 행	개 정
	다. 항만운송종사자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재직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 (제1호 비고5) 항만운송종사자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자 안전교육 받은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규정 신설
▪ 반복적·상시적 노무 제공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해석 규정 無	▪ (제1호 비고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특별)교육을 받은 후 그 날로부터 1주일 동안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
▪ (제1호가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內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규정	▪ (제1호의2) 관리감독자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조항 신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

◉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받은 해당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

3 신·구조문 대비표

■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붙임 참고

시행규칙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생략)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 ---------- ---------- ---------- ---------- ---------- ---------- ---------- ---------- ---------- ------- 반기----------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건우	연락처	044-202-8820

붙 임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개정전후 비교

개정 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교육과정</th><th colspan="2">교육대상</th><th>교육시간</th></tr>
<tr><td rowspan="4">가. 정기교육</td><td colspan="2">사무직 종사 근로자</td><td>매분기 3시간 이상</td></tr>
<tr><td rowspan="2">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td><td>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td><td>매분기 3시간 이상</td></tr>
<tr><td>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td><td>매분기 6시간 이상</td></tr>
<tr><td colspan="2">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td><td>연간 16시간 이상</td></tr>
<tr><td rowspan="2">나. 채용 시 교육</td><td colspan="2">일용근로자</td><td>1시간 이상</td></tr>
<tr><td colspan="2">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td><td>8시간 이상</td></tr>
<tr><td>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td><td colspan="2">(생 략)</td><td>(생 략)</td></tr>
<tr><td rowspan="3">라. 특별교육</td><td colspan="2">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td><td rowspan="3">(생 략)</td></tr>
<tr><td colspan="2">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td></tr>
<tr><td colspan="2">(생 략)</td></tr>
<tr><td>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td><td colspan="2">(생 략)</td><td>(생 략)</td></tr>
</table>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 4. (생 략)

개정 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현행과 같음)
	그 밖의 근로자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항만안전특별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 4. (현행과 같음)

4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표 5)

근거 법령

◇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개정 배경

■ 변화된 안전보건 관련 정책 반영 및 이행을 위해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中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

■ 정기교육(年 24H), 채용시 교육(8H) 과정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

■ 시행규칙 별표4와 연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일반 근로자교육과 분리**하고,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보완**

* ①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실시 ②근로자 지도·감독 ③근로자 교육·훈련 등

2 개정 내용

- 근로자와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신설**(별표5 1호의2)

 *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교육내용 규정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 단어 오류 정비(별표5 제1호라목제35호)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제1호가목 및 다목)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내용	▪ (제1호가목 및 다목)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내용 추가
▪ (제1호나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內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규정	▪ (제1호의2) 관리감독자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조항 신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내용 추가
▪ (제1호라목제35호)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제1호라목제35호)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적용례)** 별표5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

3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table><tr><th>교육내용</th></tr><tr><td>○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tr></table>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table><tr><th>교육내용</th></tr><tr><td>○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tr></table></td><t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table><tr><th>교육내용</th></tr><tr><td>○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tr></table>나. 〈삭제〉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table><tr><th>교육내용</th></tr><tr><td>○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td><td>○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td></tr>
<tr><td>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table><tr><th>작업명</th><th>교육내용</th></tr><tr><td>〈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의 작업</td><td>다목과 같은 내용</td></tr><tr><td>〈개별내용〉
1.~ 34.</td><td>(생 략)</td></tr><tr><td>35.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td><td></td></tr><tr><td>36.~ 39.</td><td>(생 략)</td></tr></table></td><td>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table><tr><th>작업명</th><th>교육내용</th></tr><tr><td>〈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td><td>다목과 같은 내용</td></tr><tr><td>〈개별내용〉
1.~ 34.</td><td>(생 략)</td></tr><tr><td>35.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td><td></td></tr><tr><td>36.~ 39.</td><td>(생 략)</td></tr></table></td></tr>
<tr><td>〈신설〉</td><td>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td></tr>
<tr><td>〈신설〉
<table><tr><th>교육내용</th></tr><tr><td>○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tr></table></td><td>가. 정기교육
<table><tr><th>교육내용</th></tr><tr><td>○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tr></table></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 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삭제〉 ○ 〈삭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td></tr>
<tr><td>〈신설〉
<table><tr><th>작업명</th><th>교육내용</th></tr><tr><td>〈공통내용〉</td><td>다목과 같은 내용</td></tr><tr><td>〈개별내용〉</td><td>(생 략)</td></tr></table></td><td>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table><tr><th>작업명</th><th>교육내용</th></tr><tr><td>〈공통내용〉</td><td>제1호의2나목과 같은 내용</td></tr><tr><td>〈개별내용〉</td><td>제1호라목의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의 〈개별내용〉에 따른 교육 내용과 같은 내용</td></tr></table></td></tr>
<tr><td>2. ~ 6. (생 략)</td><td>2. ~ 6. (현행과 같음)</td></tr>
</table>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건우	연락처	044-202-8820

5 수입자의 비공개승인번호 연계 허용 (시행규칙 제162조)

근거 법령

◇ **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중략)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개정 배경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혼합하여 타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간제조자의 경우 대체자료 연계사용 허용**

* 단,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대체자료 연계 사용 제외

◉ 대체자료 연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수입자 및 혼합 이외 가공**의 경우 **대체자료를 연계할 수 없는 문제점**

- 국내에서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국외에서 혼합하여 제조**한 타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 **대체자료 연계 불가**

* 국내에서 비공개승인 받은 원료로 국외에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라도 성분명을 하위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므로 수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이용해 **혼합 외의 물리적 가공**(성형, 소분 등)을 하는 경우 **화학적 조성이 바뀌지 않음**에도 **대체자료 연계 불가**

2 개정 내용

■ 대체자료 연계 허용 확대(시행규칙 개정)

◉ 제품 공급자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국내제조자 뿐 아니라 **국외제조자** 및 **수입자**도 **대체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혼합** 외 **물리적 가공**(성형, 소분 등)을 하는 경우*까지 **대체자료 연계를 허용**

* 단,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대체자료 연계 사용 제외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영업비밀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영업비밀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려는 자(국외제조자 포함)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연계 불가	・단, 화학적 조성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연계 불가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생략)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윤	연락처	044-202-8966

6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시행규칙 제163조 및 별지 65~66호 서식)

근거 법령

◇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이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불산입

1 개정 배경

▣ 제도 현황

◉ '21.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심사제도**'** 도입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산업용 화학제품 등의 제품명,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취급 설명서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해야 함 ▲화학물질 판매·양도 시 MSDS를 제공해야 함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존에는 산안법에 따라 **비공개심사 불승인**시 민원인은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접수**시 고용부(안전공단)는 **20일 내 결과를 통보**

◉ 행정법제도 관련 통일적 규정 마련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21.3.24. 시행)에 따라,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체계 정비**를 위해 **산안법 개정**('23.8월)

- **이의신청 접수**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14일 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기존 "20일"에서 "14일"로 **통지 기간 단축**)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산안법 제112조의2 신설)

◉ 산안법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정비** 및 **이의신청 회신기간 규정 삭제** 등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 비공개승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변경**
(20일 → 14일,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정비**

◉ 인용조항 변경(시행규칙 제163조,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

* 법 제112조제6항 및 제7항 → 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11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62조제5항 → 법 제112조의2제2항

■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 이의신청 기간 및 회신기간 규정,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①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 ② ----------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윤	연락처	044-202-8966

참 고 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 ⑤ (생 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 제〉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 제112조의2제2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1. ---------- 제112조의2제2항----------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제112조의2제2항----------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3. ---------- 제112조의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비밀 유지)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0. 제112조제2항·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 제112조제10항----------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6. 제112조제1항 · 제2항 ·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6. 제112조제1항 · 제2항 · 제5항 및 제112조의2----------
27. ~ 41. (생 략)	27. ~ 4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시행규칙 제175조)

근거 법령

◇ **법 제119조(석면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후략)

◇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석면조사의 생략을 신청**할 수 있으나

◉ 석면조사 생략을 위해서는 **사전에 석면의 포함 또는 불포함 여부**를 증명하는 석면조사 **생략 확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편,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석면포함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석면의 **불포함 여부**가 사실상 **확인**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 '09년 석면 금지제도 도입 후, '16.11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 협업조사 시행

- **석면조사생략 확인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

〈 석면조사 생략신청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생략신청 건수	551	430	404	691	950	3,026

2 개정 내용

■ '17.7.1. 이후 착공된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확인 면제

◉ 석면 사용 금지('09.1.1.) 이후, 석면함유제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시작('16.11.~)되고 **석면 사용 금지 제도**가 **안정화된 '17.7.1. 이후**에 **착공된 건축물**에는 **석면조사 생략 확인 통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조사 생략을 위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관세청과 협업검사가 시행됨('16.11)에 따라 '17.7.1. 이후 착공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 통지 절차 면제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적용례)** 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현 행	개 정 안
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사진·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8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대상 완화
(시행규칙 제181조 및 별지 제77호 서식)

근거 법령

◇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신고서를 지청에 제출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업을 해야 하며, 제출한 신고서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변경대상 :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및 변경서 발급의 실익이 없어 민원불편 및 행정적 낭비

2 개정 내용

■ 변경 사유 중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축소"**는 검토 실익이 없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법령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신 설>	■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만으로 기존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변경 시 제출의무 면제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생 략)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붙 임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별지 제77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구분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 유치원 또는 학교 [] 정비사업 [] 기타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 해체·제거업자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및 기간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부피(㎥)·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나 작업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합니다) 1부 3. 석면조사 결과서 1부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시행	증명서 발급
신고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해제 절차 명문화 (시행규칙 제221조)

근거 법령

◇ **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8조제2항에서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시행규칙 제221조는 제220조와는 다르게 근로를 제한하거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

2 개정 내용

■ 근로를 하기 어려운 질병 등이 있어 **근로를 제한**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③ <신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이	연락처	044-202-8873

10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서식 신설 (시행규칙 제228조의2, 별지 제90호의2 및 3 서식 신설)

근거 법령

◇ **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합격 확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 지도사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증 발급(제145조)

■ 현재, **다른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경우, **등록과 별개**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있었고,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지도사 자격증 신청·발급 절차 규정 ▪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증 서식 별지 규정

■ **(시행일)** 2023년 9월 28일

3 신·구조문 대비표

□ **시행규칙**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 **시행규칙 별지** 〈신설〉

◉ (붙임1)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별지 제90호의2서식)

◉ (붙임2) 지도사 자격증 발급 서식(별지 제90호의3서식)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태	**연락처**	044-202-8814

붙 임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별지 제90의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

지도사 자격증 [] 발 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산업안전지도사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산업보건지도사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초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이전에 발급 받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자격증 발급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 임 지도사 자격증 발급 서식 [별지 제90의3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3서식]

제 호

지도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자격 취득일:

4. 업 무 영 역:

(사 진)
5㎝×7㎝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발급기관: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11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추가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근거 법령

◇ **(법 제17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함

◇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시 제출할 양식 규정

1 개정 배경

■ 사업주는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선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제출해야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비용 결정** 등으로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 전반에 지대한 영향,

* **산안법 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이에 산안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88), 부당 공기단축·공법변경 금지('11), 안전보건조정자('17) 등 발주자의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 산안법 전부 개정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비용·기간 보장 등을 통해 시공단계에서의 발주자 책임·의무를 규정하였음
 ⇒ 법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규정이 없음**

2 개정 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포함하도록 **개선**

*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기술지도계약서) 참조

◉ 또한,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덕원	연락처	044-202-8938

붙 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분류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설 등 []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 다목적댐 등 댐 건설 등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아님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 등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 아래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 [] 겸임 [])	

보건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 [] 겸임 [])	

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 [] 겸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 제22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9조,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 변경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제105호 서식)

* 시행령 개정('22.8.18.)에 따른 후속 조치

근거 법령

◇ **(법 제73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 변경**('21.8.17. 법 개정, '22.8.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으로 '22.8.18.부터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 포함

■ **기술지도기관 지도업무 관련 의무 신설**('22.8.18. 시행령 별표18 개정·시행)

①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방법 등 구체화***

* **도급인**이 지도기관의 **지도사항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발주자에** 해당 사실 **통보**

②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건설업체 **본사에 통보***

* 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실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건설업체 **본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공사금액 50억, 분기 1회 이상)

→ 기술지도 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에 건설업체 본사 정보 **명시 필요**

2 개정 내용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본사"**로 **구분**하고, 건설업체 **본사 상세정보** (현장책임자, 본사 주소·연락처, 법인등록번호·건설면허번호 등) **추가**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등 **지도기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 수집 의무화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본사 통보 활성화**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발급번호 신설**

◉ 발주자·도급인이 **지도기관**의 **적정성**(합법적인 지정 여부 등) **확인**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신설)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신설)
	담당자	전화번호

개 정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기술지도계약서 서식(별지 제104호서식)
- (붙임2)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서식(별지 제105호서식)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주무관 김병석	연락처	044-202-8937 044-202-8939

붙임 1 기술지도 계약서 [별지 제104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 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별지 제105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 주도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 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399호, 2023.11.14. 공포)

1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안전보건규칙 제13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가로방향으로 **중간 난간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난간 상하 간격이 60㎝ 이하가 되도록 균등하게 설치

■ 그로 인해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가로방향으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개선의 필요성 지속 제기

* 현행 안전난간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대해서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의무 면제(규칙 제13조제2호 단서)

◉ **미국 및 유럽**의 안전난간 기준에서도 가로방향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세로방향의 난간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미국)** 중간 난간대의 구성은 중간난간, 수직재(수직재 간의 간격이 19inch(48㎝) 이상) 등 또는 동등의 중간재로 설치
(유럽) 중간 가드레일이 없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장자리 보호시스템은 직경이 250㎜인 구가 통과되지 않는 넓이로 설치

◉ 이에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조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다만,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중간난간대 이외 발끝막이판 설치 등 **현행 안전난간의 규조는 유지**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규칙 제13조)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규정 내용 중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을 계단의 개방된 측면 뿐만 아니라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에 적용

■ 개정 전후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대상> ▪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대상> ▪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생 략) 1. (생 략)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설치해야 ----------. 다만, ----------

현 행	개 정 안
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않을 --------.
3.~ 7. (생 략)	3.~ 7.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중	연락처	044-202-8851

2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17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17조)**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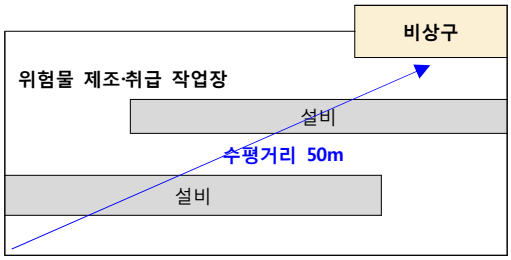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 ①출입구와 다른 방향, 3미터 이상 이격 ②작업장의 각 부분부터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 ③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 ④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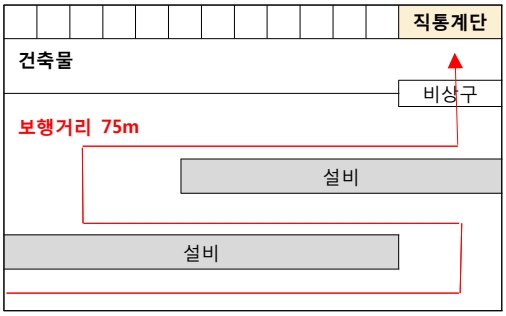
◉ 다만, 해당 기준이 **건축법령상 거리기준과 차이**가 있어 공장 신설 시 설계·착공 단계에서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해 사업장 혼선* 발생

* 경총 규제개선 건의('22.8.22), 반도체업계 규제개선건의('23.5.19) 등을 통해 기재부 경제규제 TF 과제에 포함

구 분	안전보건규칙	건축법(직통계단)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평거리 50m 이하	· **(원칙)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안전보건규칙 상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



<건축법 상 직통계단 설치 거리기준>

◉ 또한, 너비 100미터 이상의 공장에는 한가운데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므로 **생산장비 배치의 비효율성 발생**

2 개정 내용

■ 기존의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건축법령**을 **준수**하면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또는 출입구) 설치 거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

◉ 건축법령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

◉ **비상구** 규정 역시 **비상사태시 대피**를 감안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직통계단 설치거리 기준 준수 시 비상구(또는 출입구)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장의 혼선 방지

구분	안전보건규칙	건축법(직통계단)	비고
수평거리 (보행거리)	· **(원칙)**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또는 출입구) 설치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원칙)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안전보건규칙(수평거리 50m)보다 **기준이 엄격**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 간주규정 적용시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발생**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보행거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수평거리 기준은 공간 내 어디에서든 기준거리 안에 비상구 또는 직통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등을 비상구(또는 출입구)로 간주하는 것임
* 다만 건축법령 자체가 피난층으로 향하는 '직통계단'에 대한 규정이므로, 계단과 관련 없는 **지상층은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에 따라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2. ----------.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주무관 김승이	연락처	044-202-8855

3 계단참의 설치 기준 개선 (안전보건규칙 제28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 동 조항은 계단참의 **높이가 아닌**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조항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계단참의 설치'로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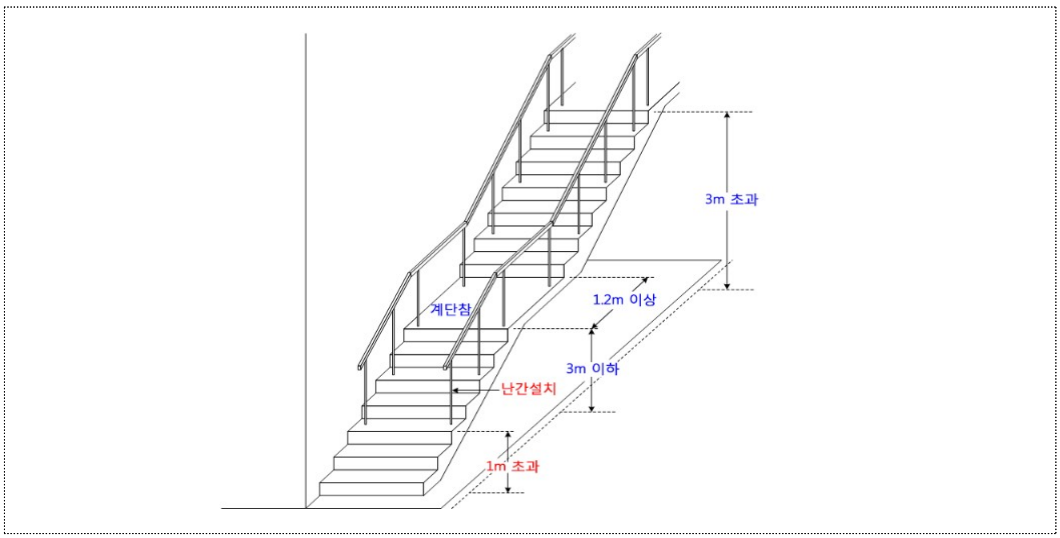
■ 또한, **계단참** 설치에 있어 기준이 되는 '**너비 1.2미터** 이상 설치'는 규정 취지*상 **계단 이동방향**으로 1.2미터 이상 설치하는 것이나

* 계단참은 휴식, 방향 전환 시 추락위험 방지 및 전도 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설치

◉ **'너비'를 계단의 폭으로 인식**하여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명확한 문구로 변경** 필요

* '너비'의 사전적 의미는 '폭'과 동일: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계단참〉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목인 **'계단참의 높이'를 '계단참의 설치'**로, **계단참의 이동 방향**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너비'를 **'진행방향으로 길이'로 수정**

■ **개정 전후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계단참 설치규정> ▪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참 설치규정>** ▪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 ---------- ----- 진행방향으로 길이 ------ 설치해야 ------.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중	연락처	044-202-8851

4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 기준 합리화 (안전보건규칙 제60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1 개정 배경

■ **(현행)**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 붕괴 방지**를 위해 **강관비계의 구조**를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 제1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호에**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단서 규정에 따라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경우**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및 장선 방향 각각 2.7m 이하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제조업이 공장 내 **비계 설치** 시 **불가피한 사유**(장비 도어 개방 불가, 시설물 간섭 등)가 발생할 때에는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해서도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를 **건의***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 대해서만 단서 규정을 통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맞지 않음**

◉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예외 규정 적용 필요

2 개정 내용

■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 비계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비계 기둥에 대한 설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

■ **개정 전후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고 조립도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고 조립도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 2.7m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 ---------- 준수해야 ----.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1.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 ---------- ---------- ---------- ----------.
〈신 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신 설〉	나. 그 밖에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연락처	044-202-8937

5 입환기의 정의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98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입환기는 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의미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입환작업에만 이용되는 열차**를 입환기로 **오인**하는 사례 등 발생

* 인력 또는 동력차로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

■ 특히, 최근 **입환기 없이 열차의 자체 동력으로 입환작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입환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

2 개정 내용

■ 입환기는 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화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	▪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해야 ----------. ③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주무관 김승이	연락처	044-202-8855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전도방지 규정 표현 정정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전도방지 관련 규정의 문법상 오류 수정

2 개정 내용

■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를 "지반의 부동침하"로 수정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 ---------- ---------- ---------- ---------- --- 부동침하 ---------- ---------- 해야 -------.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주무관 김서환	연락처	044-202-8856

7 고소작업대 이동 규정 명확화 (안전보건규칙 제186조제3항)

근거 법령

◇ **(법 제38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1 개정 배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유도자 배치** 등의 경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충되게 규정

◉ 한편, 최근에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선할 필요

* '22.9.22.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2 개정 내용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근로자를 태우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마다 근로자가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곤란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제한(이 경우에도 유도자 배치+단거리 이동시 허용)	▪ 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준수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자----------. ----------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전문위원 서재민	연락처	044-202-8857

8 경사면 외에서의 중량물 구름 위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86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1 개정 배경

▣ 현행 규칙은 중량물 취급 시 경사면에서의 구름 방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도 구름 방지 조치 등 필요**

* '22.9월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의 중량물 구름으로 인한 사고 사례 등 있음

2 개정 내용

▣ 중량물 취급 시, **경사면이 아니더라도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구름 위험방지>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 취급 시 구름 위험방지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의 경사면 아래로 출입 제한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 보관 또는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 취급 시 구름 위험방지 ▪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 거리 이내로 출입 제한 단, 경사면에서는 경사면 아래로 출입 제한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연락처	044-202-8852

9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유해가스 명칭 변경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근거 법령

◇ **(법 제39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안전보건 규칙 제61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1 개정 배경

■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라는 물질명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별표18] 제13호, 제14호에 탄산가스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탄산가스는 유사명으로 사용에 혼동이 있어 명칭 통일 필요

※ '노출기준 설정물질', 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은 이산화탄소(CO_2)로 표기하고 있음

* 화학물질 명명, 용어 표준화 등 수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화학회 참여

◉ 이에 유사명인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개정하여 용어에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2호, 제3호 및 [별표18] 제13호, 제14호의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개정**

■ **개정 전후 변경 사항**

※ 안전보건규칙 전체 명칭 일괄 변경

현 행	개 정
<유해가스 종류 명칭> ▪ 탄산가스	<유해가스 종류 명칭> ▪ 이산화탄소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5. (생 략)	제618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이산화탄소----------. 3. ---------- 이산화탄소----------. 4.·5.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연락처	044-202-8871

10 붕괴 안전기준 정비 관련 보완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38조, 제39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관련**

1 개정 배경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 **용어 정의** 및 일부 규정 간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완**

* ① 붕괴·낙하 위험 방지 일반기준(제50조~제53조)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제328조~제337조 및 별표10)
③ 노천굴착작업 안전기준(제338조~제347조 및 별표11)
④ 해체작업 시 안전기준(제384조)

2 개정 내용

▣ 용어 정의

◉ **안전보건규칙**은 법 제38조 등에 따른 사업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위임법령**이므로, **모법의 표현을 준용***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제20조제11호)** "토석(土石)" → 토사·암석 등 : **"토사등"**

* ▲ 토석(土石) : 흙과 돌
▲ 지반(地盤) : 땅의 표면
▲ 토사(土砂) : 흙과 모래
▲ 암석(巖石) :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단단한 물질

- **(제38조제10호)** "건물" →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 : **"구축물등"**

* ▲ 건물 :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로,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
▲ 건축물 :「건축법」제2조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구축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제2조 9.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되는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
▲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 의미가 불명확한 정의 삭제 등 명확화

◉ **(제20조) 현행 제11호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은 의미가 모호하여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로 **수정**

◉ **(제38조) 현행 제6호**는 모든 **굴착작업을 "높이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7호 "터널*굴착작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 '터널'은 단면적 2㎡ 이상인 원형(반지름 약 0.79m)부터 적용

■ **미비 규정 신설**

◉ **(제39조) '21.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시민 9명 사망)의 주된 사고원인은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 및 작업반경 내 관리 부재 등으로, **동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신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례)**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1.1. 이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 ---------- --- 금지해야 ------. ---------- ---------- ---------- ---------- ---------- ------ 그렇지 않다.

현 행	개 정 안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11. 토사·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 ---------- ---------- ---------- ---------- 기록·보존해야 ---------- ---------- ---------- ---------- ------ 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6. ---------- ----- 굴착작업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 ---------- ---------- 해야 ------. ---------- ---------- ---------- ---------- ---------- ---------- --------- 않을 ------. ② (현행과 같음)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민병윤 주무관 박승현	연락처	044-202-8943 044-202-8940

11 붕괴 일반 안전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50조~제53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1편제6장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관련**

1 개정 배경

■ 사업주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 이를 **안전보건규칙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나, 붕괴사고의 주요인 중 하나인 설계·시공법 변경 시 구조검토 등 **필수 내용 부재**

◉ 이에,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간 개정 검토가 미흡, 미비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기준의 현장 이행력 제고**

2 개정 내용

▣ 용어 정비

◉ 조문별로 달리 규정되어 **해석상 혼선이 있는 용어를** 선행 조문(제20조, 제38조)에서 정의한 **용어(토사등, 구축물등)로 일원화**

* ▲(제50조)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제51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 구축물등
▲(제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 구축물등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 구축물등

▣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간소화

① **(제51조)** 불필요하게 열거된 현행 각호는 삭제하고, 관계 **법령상* 정의를 준용**하여 **간소화**

*「건축법」 제2조(정의) ①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아울러, 해체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 준수 의무를 반영하고, 시공·해체 등 작업으로 인해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도록 명시

* '21.6월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시민 사망 9명)

【참고】「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 2022.2.3. 신설 >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 **(제52조)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안전성 평가** 의무 **명시**

- **'22.1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사망 6명) 등 대규모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둥·보·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 **명시**

③ **(제53조) 계측시공*** 의무 **요건 명확화**

* (계측시공) 연약지반공사 중의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지중침하계 등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지반 변위, 지하수 변화, 인접 구조물 침하여부 등을 확인

- 현행 조문 **전단**의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미 모호**

→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토목공사 또는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건축공사로 **명기**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때부터 적용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 해야 ------.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삭 제〉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삭 제〉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삭 제〉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

현 행	개 정 안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1. 구축물등----------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구축물등---------- 발생했을 ------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구축물등----------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4. --------- 구축물등---------- 저하됐을 ------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5. ---------- 않던 구축물등---------- 검토해야 ------
〈신 설〉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 행	개 정 안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민병윤 주무관 박승현	연락처	044-202-8943 044-202-8940

12 거푸집 동바리 안전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328조~제337조, 별표 10)

근거 법령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편제4장제1절(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관련**

1 개정 배경

■ **(대형사고 지속)**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 지속**

〈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로 인한 다수 근로자 사망사고 사례 〉

① '19.3월 **안동** 환경시설(사망 3명), ③ '22.10월 **안성** 물류창고(사망 3명),
② '22.1월 **광주** 공동주택(사망 6명), ④ '23.8월 **안성** 근생시설(사망 2명)

- **(명확화)** 현행은 공정·작업순서와 무관하게 **일반 안전조치**와 **기술적인 조치**기준이 **혼재**하여 건설종사자도 **이해가 어려움**
- **(현행화)** 기술·환경 변화로 현장에 **대중화된 공법**(데크플레이트 등) 등 **핵심 안전기준이 불명확**하고, **낡은 규정은**(목재동바리 등) **잔존**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핵심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고, 낡고 불합리한 규정은 **현행화**하여 **안전보건규칙**의 **이행력 제고**

2 개정 내용

1 **(체계 개선)** 조문 순서를 **공정·작업순서에 맞게 재편**하고, 혼재된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안전조치를 일반/유형별로 재분류**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개정 전	개정 후
거푸집동바리등의 재료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및 구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
계단 거푸집 안전조치	거푸집 일반/유형별 안전조치
콘크리트타설	↓
조립 등 작업 중 안전조치	동바리 일반/유형별 안전조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
	조립 등 작업 중 안전조치
	↓
	콘크리트타설

2 **(핵심 안전조치 명확화)** 그간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을 고려하여 **핵심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

-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보 형식 동바리" 규정 명확화**

3 **(현행화) 기술변화**에 따른 **불합리 규정 삭제, 신기술 반영 등**

- 동바리 부재로 적합하지 않은 **비계용 강관, 목재**를 사용한 동바리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 **맞댄이음, 장부이음** 등 목재를 서로 잇는 방법 관련 규정 **삭제**
- 최근 건설공사 기술변화를 반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에 초고층 콘크리트타설에 활용되고 있는 CPB(Concrete Placing Boom) **추가 등 현행화**

〈 콘크리트타설장비 예시 〉

콘크리트 펌프카 – 중저층	콘크리트 분배기 – 중고층	콘크리트 타설 붐(CPB) – 초고층
		

4 **(합리화)**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재료의 강도에 대한 수치화된 기준(별표 10)은 삭제**하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합리화**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개정 전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주요 부분의 강재는 아래 [별표 10]의 기준을 준수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kg/㎟)	신장률(%)
강 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60 이상	8 이상
봉 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개정 후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주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5 **(용어 정비)**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상의 용어**와 실제 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 국토교통부 고시(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50 05 : 2023) 〉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제1관 재료 등	제1관 재료 및 구조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이 장에서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8조(재료) -------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 안 된다.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9조(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0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 거푸집 및 동바리를 ---------- ---------- 사용해야 ------.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1조(조립도) ① ------- 거푸집 및 동바리를 ---------- ---------- 해야 ------.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 ---------- 명시해야 ------.
〈신 설〉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생 략)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 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준수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4. ---------- 갱 폼----------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5. ---------- 갱 폼---------- 않을 ------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 서포트(pipe support)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

현 행	개 정 안
나.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8.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9.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7호나목의 조치를 할 것 10.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제7호나목의 조치를 할 것	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현 행	개 정 안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 시스템 동바리(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제7호가목의 조치를 할 것	

현 행	개 정 안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네 군데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나 멍에에 고정시킬 것 13.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14.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 설〉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

현 행	개 정 안
	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현 행	개 정 안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집 동바리) 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제332조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2. 깔판·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생 략)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 거푸집 및 동바리를 ----------. 1. ~ 3. (현행과 같음) 4. ---------- 거푸집 및 동바리를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현 행	개 정 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해야 ------.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1. ---------- 거푸집 및 동바리----------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2. ---------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4. ---------- 거푸집 및 동바리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 준수해야 ------.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1. ---------- 콘크리트타설장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table><tr><th>강재의 종류</th><th>인장강도(kg/㎟)</th><th>신장률(%)</th></tr><tr><td rowspan="3">강관</td><td>34 이상 41 미만</td><td>25 이상</td></tr><tr><td>41 이상 50 미만</td><td>20 이상</td></tr><tr><td>50 이상</td><td>10 이상</td></tr><tr><td rowspan="4">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td><td>34 이상 41 미만</td><td>21 이상</td></tr><tr><td>41 이상 50 미만</td><td>16 이상</td></tr><tr><td>50 이상 60 미만</td><td>12 이상</td></tr><tr><td>60 이상</td><td>8 이상</td></tr><tr><td rowspan="3">봉강</td><td>34 이상 41 미만</td><td>25 이상</td></tr><tr><td>41 이상 50 미만</td><td>20 이상</td></tr><tr><td>50 이상</td><td>18 이상</td></tr></table></td><td>3. 콘크리트타설장비----------
4. ----------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 콘크리트타설장비----------

[별표 10] 삭제</td></tr>
</table>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민병윤 주무관 박승현	연락처	044-202-8943 044-202-8940

13 노천굴착작업 안전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347조, 별표 11)

근거 법령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1관(노천굴착작업) 관련**

1 개정 배경

■ 건설공사, 채석장, 문화재 발굴지 등에서 **굴착작업 중 토사 등의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 중

〈 토사 등의 붕괴로 인한 다수 근로자 사망사고 사례 〉

① '22.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굴착사면 붕괴사고(사망 3명)
② '22.11월 경기 화성시 문화재 발굴현장 굴착사면 붕괴사고(사망 2명)
③ '23.3월 충남 천안시 배수관 설치작업 중 옹벽 붕괴사고(사망 2명)
④ '23.9월 경기 의왕시 송수관 연결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사고(사망 2명)

■ 또한, 현행 **굴착면 기울기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 요구**

*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보통 흙 건지·습지 구분 기준 미비

■ 최근 사망사고 사례와 현장 실태를 고려해 굴착작업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2 개정 내용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규제 합리화**

◉ **현행** 굴착면의 기울기(별표 11) 기준상 **"건지", "습지"** 등 모호한 기준은 삭제하고, 「건축법」 기준과 일치

◉ 추가로,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표준시방서, 국가설계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 준수도 예외적으로 허용**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현 행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제338조제1항 관련)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1 : 1.5
	건지	1 : 0.5~1 : 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개 정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이하 같음)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제339조제1항 관련)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관련 기준 간 통일성 확보

◉ **국가설계기준**(국토부)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구조검토 등 안정성 확인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에도 준용**

-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를 작성할 때 **"구조검토"** 의무 **명시**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현 행	개 정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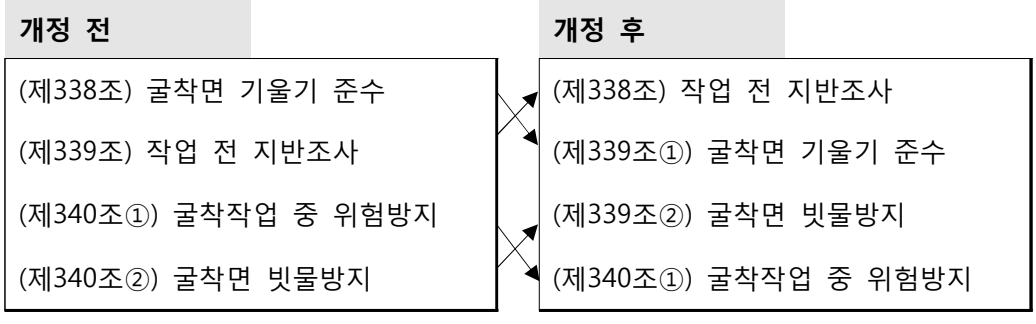
법령 체계·자구 정비

◉ **(제338조~제340조)** 작업순서 및 조치내용에 따라 **조문 재배치**

- 굴착작업 시에는 토질, 함수(含水), 용수(湧水) 등 **지반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 현행 제338조~제340조에 혼재되어있는 ① **작업 전 지반조사,** ② **굴착면** 붕괴 방지, ③ **굴착작업** 시 붕괴 방지 **순서로 정비**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 **(제342조~제344조)**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 **혼재된 용어 일원화**

- (제20조제12호)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 (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
- (제342조)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
- (제343조)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 (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이라 한다)

→ 선행 조문(제20조)의 정의에 따라 **"굴착기계등"**으로 **일원화**

〈 법령 개정 전후 변경사항 〉

현 행	개 정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생략)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 제342조와 같음) 2. 굴착기계등의 (현행 제343조와 같음)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사업주는 (생략)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 (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 등"이라 한다) (생략)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운반기계등	**제343조(굴착기계등의 유도)** 굴착기계등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현 행	개 정 안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	〈삭 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제338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지반의 종류</th><th>기 울 기</th></tr>
<tr><td rowspan="2">보 통 흙</td><td>습 지</td><td>1 : 1~1 : 1.5</td></tr>
<tr><td>건 지</td><td>1 : 0.5~1 : 1</td></tr>
<tr><td rowspan="3">암 반</td><td>풍 화 암</td><td>1 : 1.0</td></tr>
<tr><td>연 암</td><td>1 : 1.0</td></tr>
<tr><td>경 암</td><td>1 : 0.5</td></tr>
</table>
</td><td>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 굴착기계등이 ---------- ---------- ----------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제339조제1항 관련)

<table>
<tr><th>지반의 종류</th><th>굴착면의 기울기</th></tr>
<tr><td>모래</td><td>1 : 1.8</td></tr>
<tr><td>연암 및 풍화암</td><td>1 : 1.0</td></tr>
<tr><td>경암</td><td>1 : 0.5</td></tr>
<tr><td>그 밖의 흙</td><td>1 : 1.2</td></tr>
</table>
</td></tr>
</table>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민병윤 주무관 박승현	연락처	044-202-8943 044-202-8940

14 해체작업 시의 위험방지 안전기준 정비 (안전보건규칙 제384조)

근거 법령

◇ **(법 제38조 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편제4장제4절(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4조(작업중지) 관련**

1 개정 배경

■ '21.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중 붕괴로 **시민 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도 **해체공사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

■ 그간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사고원인** 및 **핵심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신설**

2 개정 내용

■ **(現. 제384조) 악천후 시 해체작업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 안전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제3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생략)

■ **(改. 제384조)** 해체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旣 의무화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상의 **주요 안전조치 명시**

【참고】「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 2022.2.3. 신설 >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절 해체작업 시 위험방지
제384조(작업중지)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민병윤 주무관 박승현	연락처	044-202-8943 044-202-8940